| 보도자료<br>2026. 11. 12. | 대 법 원<br>Supreme Court of Korea | |
|---|---|---|
| | 담당부서 | 사법등기국 |
| | 담당자 | 사법등기심의관 김동휘(☏ 02-3480-1553) |
| | 공보관실 ☏ 02-3480-1451 | |

# 〈대법원, 등기사항증명서 등 열람·발급수수료 인상〉

## - 등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 -

- 약 29년간 열람·발급수수료 동결, 등기시스템은 지속적 고도화
-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해 등기제도의 운영재원인 등기특별회계 적자가 2022년부터 지속, 등기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에 차질 우려
- 등기사항증명서 등 열람·발급수수료 무료화는 '일반 국민에 대한 부담 전가' 및 '대출 및 체납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대량 무단수집' 등의 새로운 문제 초래
- 등기특별회계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후, 2002년, 2005년과 같이 수수료 재인하를 적극 검토 예정

**▣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, 등기기록 등의 열람,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2026. 11. 23.부터 일괄 400원 인상 예정**

○ 등기제도는 세금이 아니라 이용자가 내는 수수료 등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등기특별회계로 운영되며, 이 수입으로 등기소 설치·관리비, 전산시스템 구축·운영비 등을 충당함(「등기특별회계법」 제3조). ⇨ 현행법상 등기특별

회계는 적자가 나더라도 일반회계(세금)로 보전할 수 없고, 등기시스템 유지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직접적인 편익을 받는 이용자가 수수료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

○ [그런데]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한 거래량 감소로 수수료 세입은 줄어든 반면, 물가 상승으로 운영비 등 세출은 계속 늘어 2022년부터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왔음

○ 이번 인상은 안정적인 등기서비스 제공과 보안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,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임

## ▣ 등기특별회계 적자를 서민 안전 확인 비용으로 전가한다는 의견에 대한 설명

○ 대법원은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약 22년 ~ 29년간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열람·발급수수료를 동결·유지해 오면서도, 등기시스템 및 열람·발급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음

- 방문열람·발급은 약 29년간, 무인발급은 약 25년 동안 조정 없이 동결해 왔고, 인터넷에 의한 열람은 몇 차례 조정을 통하여 약 24년 전, 인터넷에 의한 발급은 약 22년 전과 동일한 금액을 유지함

- 그럼에도 모바일 열람, 전자문서지갑 제출, 신탁원부 인터넷 열람, 등기정보광장 운영 등 등기서비스 범주를 꾸준히 확대해 옴

○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한 거래량 감소로 등기제도의 유일한 운영재원인 등기특별회계가 2022년부터 재정건전성이 악화됨

- 열람·발급수수료 인상계획 전, 이미 등기신청수수료 인상,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 및 자체적인 세출 구조조정 등 다각적 노력을 하였음에도, 재정 적자가 한계에 이르러 등기제도의 운영 기반이 약화됨

○ 따라서 이번 열람·발급수수료 조정(400원 인상)은 권리확인 비용을 특정 이용자 집단에게 전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, 권리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

전제되어야 할 등기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

## ▣ 다른 공적장부와의 형평성 위배 의견에 대한 설명

○ 등기제도의 유일한 운영재원인 등기특별회계는 수수료를 주요 세입원으로 하고 있으며,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여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법률상 일반회계(세금)로 보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, 일반회계에서 운영비용이 보전되는 다른 공적장부의 온라인 열람·발급 무료와 단순 비교하여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움

○ 등기는 다른 공적장부와 회계운영, 수수료 산정방식 등이 다른 공시제도임

| 구분 | 일반 공적장부<br>(대장, 주민등록, 가족관계등록부) | 등기부<br>(부동산등기부, 법인등기부) |
|---|---|---|
| 1. 회계운영 | ‖ 일반회계<br>• 세금(국세, 지방세)을 주요 세입원으로 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 관리 | ‖ 특별회계<br>•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섞이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운영 → **적자발생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(보전) 불가**<br>• **수수료가 주요 세입원에 해당함** |
| 2. 수수료 산정방식 | ‖ 개별 원가산정방식 부과<br>• 개별 서비스 제공에 드는 실비 위주로 부과하므로, 인터넷 발급 무료<br>• 예 : 대장정보, 주민등록, 가족관계등록부는 인터넷 발급이 무료이더라도 운영비용을 일반회계로 충당 가능 | ‖ 등기제도 전체 운영 재원<br>• **개별 열람·발급신청의 정보처리비용뿐만 아니라, 등기특별회계 전체 세출 항목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부과**<br>• 예 : 등기소 증·개축, 등기소 운영경비, 등기사무 전산화, 정보보안 유지비 등 |
| 3. 공시내용 및 목적 | ‖ 사실관계 공시<br>• 부동산 현황, 주소 등 사실관계 공시<br>• 세금 부과(대장정보), 인구 동태 파악 등 행정사무의 목적으로 작성됨 | ‖ 권리관계 공시<br>• 소유권, 담보물권 등 **권리관계 공시**<br>• 거래 안전 도모,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작성됨 |
| 4. 개인정보 보호 | ‖ 타인 정보 열람 제한<br>• 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정보: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만 열람 가능 | ‖ 타인 정보 열람 가능<br>• **누구나 수수료만 납부하면 타인의 정보**(소유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개인정보) **열람 가능** |
| | ‖ 타인의 기본정보만 제공<br>• 대장정보: 부동산표시와 소유자 정보만 있으나, 소유자 증명 기능은 없음 | ‖ 타인의 민감정보까지 제공<br>• **대출 유무 및 규모(근저당), 체납 유무(압류), 소송 정보(보전처분) 등 민감정보까지 제공** |

## ▣ 인터넷 열람·발급수수료 무료화 요청 의견에 대한 설명

### ■ 인터넷 열람·발급수수료 무료화는 등기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반면,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

○ 인터넷 열람·발급수수료를 무료화할 경우, 수수료 부담 주체가 '해당 서비스 이용자'에서 '국민 전체'로 확대됨

- 현재 인터넷 열람·발급서비스의 주요 이용자는 등기정보를 기초로 영업활동을 하는 특정 직역 종사자들임. 반면 일반 국민들은 전·월세 계약이나 부동산 거래 등의 필요에 따라 이를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침

-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열람·발급수수료 무료화에 따른 재원 부족분을 일반회계로 보전하는 것은, 특정 직역의 영업 관련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. 특히 **등기서비스를 거의 또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 일반 국민에게까지 비용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음**

○ 등기명의인의 성명, 주소뿐만 아니라 대출 및 체납정보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정한 목적으로 대량 수집될 수 있어 범죄로 악용될 우려 있음

-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등기명의인의 성명과 주소뿐만 아니라 대출 금액, 체납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자산 내역이 포함되어 있음. 수수료라는 현실적 장벽이 사라지면 자동화 프로그램(봇, 스크래핑)을 이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시도가 급증할 수 있음

- **특히 최근 발전한 AI 기술이 결합되면 대량 수집된 등기정보에서 특정인의 재산 및 대출 현황을 선별·분석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지며,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 등 정밀 타깃형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**

### ■ 인터넷 열람·발급수수료 무료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

○ 이처럼 인터넷 열람·발급수수료 무료화는 단순히 이용 편의성 측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, 국민 세금 부담의 형평성, 개인정보 보호,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등 다양한 정책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

## ▣ 등기전산망 한계비용이 0이라는 의견에 대한 설명

### ■ 인터넷 열람 · 발급수수료 ≒ 등기전산망 이용료

○ 등기사항증명서 등 열람·발급수수료는 개별 열람·발급 신청에 소요되는 정보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의 접수·심사·기록·보존 등 등기제도 전반을 유지·관리하는데 전액 투입되는 필수 재원에 해당함

○ 인터넷 등을 통하여 열람·발급되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방대한 등기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여 만들어 낸 최종 산출물에 해당하므로, 인터넷 열람·발급수수료를 단순히 등기 전산망 이용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용료만으로 보기 어려움

- 전국 167개 등기관서에서 하루 평균 2만 8천여 건의 각종 등기사건을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, 개별 등기관서에서 심사하여 처리된 수백만 건의 대량 등기정보는 별도의 독립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저장·유통·관리됨

○ 또한 인터넷 열람·발급수수료는 종이, 잉크 등의 부담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미 방문 열람·발급수수료와 차등 책정되어 있음

### ■ 다른 나라의 사례

○ 참고로 일본의 경우, 등기정보 온라인 열람은 330엔(약 2,700원)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, 온라인 발급은 520엔(약 4,400원)을 부과하고 있음

## ▣ 전세사기 방지 정책에 역행하는 인상이라는 의견에 대한 설명

### ■ 등기시스템의 안정성은 전세사기 방지 정책의 근간이 됨

○ 전·월세거래를 비롯한 각종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등기시스템 자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세사기 방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됨

○ 또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통합정보시스템(안심전세앱)을 통해 국민들이 전세사기 위험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도록,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춰 선순위 권리 존부 등 필수 등기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임

■ 사안의 시급성 및 향후 재인하 검토 예정

○ 이번 열람·발급수수료의 인상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, 등기신청수수료의 인상 등 다각적인 자체 노력에도, 2022년부터 지속된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여건 악화가 최근 더 심해진 결과를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임

○ 다만, 향후 등기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경우, 종전 열람·발급수수료 인하 사례(2002년, 2005년)와 같이 열람·발급수수료 재인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임

**▣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하여 앞으로도 등기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편익을 위한 등기서비스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음**

○ 등기는 세금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수수료로만 운영되는 제도임. 20년 넘게 수수료를 동결해 왔지만, 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음.

○ 이번 열람·발급수수료 인상을 통하여 추가 확보된 재원은 등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될 뿐만 아니라, 미래등기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AI 등기정보 분석 등 더 나은 등기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임

○ 대법원은 앞으로도 더 나은 등기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음

**※ 2026년 11월 23일 시행 예정인 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2026년 9월 28일부터 2026년 11월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요 의견 및 국회전자청원(국민동의 청원 이유)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설명을 목적으로 한 보도자료입니다.**

## [등기 발급·열람 수수료 인상의 대상과 범위]

<table>
<tr><th>종류</th><th>방법</th><th colspan="2">개정 전</th><th>개정 후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등기사항증명서<br>발급수수료<br>(규칙 제2조)</td><td rowspan="2">방문발급<br>(제1항)</td><td>1장 ~ 20장</td><td>1,200원</td><td>1,600원 (↑400)</td></tr>
<tr><td>20장 초과</td><td>초과 1장마다<br>50원 추가</td><td>동결</td></tr>
<tr><td>무인 및<br>인터넷발급(제2항)</td><td colspan="2">1,000원</td><td>1,400원 (↑400)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등기기록 등<br>열람수수료<br>(규칙 제3조)</td><td rowspan="2">방문열람<br>(제1항)</td><td>1장 ~ 20장</td><td>1,200원</td><td>1,600원 (↑400)</td></tr>
<tr><td>20장 초과</td><td>초과 1장마다<br>50원 추가</td><td>동결</td></tr>
<tr><td>인터넷열람<br>(제2항)</td><td colspan="2">700원</td><td>1,100원 (↑400)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인감증명서<br>발급수수료<br>(규칙 제5조)</td><td>방문발급<br>(제1항)</td><td colspan="2">1,200원</td><td>1,600원 (↑400)</td></tr>
<tr><td>무인발급<br>(제1항)</td><td colspan="2">1,000원</td><td>1,400원 (↑400)</td></tr>
<tr><td>인터넷예약발급<br>(제1항)</td><td colspan="2">1,100원</td><td>1,500원 (↑400)</td></tr>
<tr><td>전자인감증명서<br>발급(제2항)</td><td colspan="2">1,000원</td><td>1,400원 (↑400)</td></tr>
</table>